

# 행 정 자 치 부

## 징계 · 시정 요구

제 목 개발행위 허가지 위법행위 민원처리 부적정 등

기 관 명 강원도

관 계 기 관 평창군

징계대상자 평창군 ○○○○과 지방○○○○ ○○○

※ 훈계대상자 ① 평창군 ○○○○실(전 ○○○○과) 지방○○○○○ ○○○

② 평창군 ○○과 지방○○○○○ ○○○

징계종류 경징계

내 용

지방○○○○ ○○○은 2016. 1.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조  
합법인 대표 ○○○이 신청한 개발행위허가 건 업무담당으로서, 지방○○○○○  
○○○은 2014. 9. 1.부터 2016. 6. 30까지 동 건 실무담당자로서, 인접 토지주가  
제기한 산림 추가 훼손지 및 토지피해 주장 건과 관련하여 각각 업무를 담당하  
였다.

아울러 지방○○○○○○○○는 2012. 11.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동 건  
관련한 산림 추가 훼손지 확인을 위한 현장을 출장 조사한 실무담당자였다.

평창군에서는 2015. 12. 4. ○○○○○○○조합법인 대표 ○○○이 단독주  
택 및 진출입로 목적으로 신청한 ○○○면 ○○리 0-00외 2필지에 대하여 개발  
행위허가<sup>75)</sup>를 하였고, 허가기간 중 민원발생에 따라 2016. 6. 24. 위법사실을

75) 평창군 허가번호 제2015-000호(2015.00.0.) 건축부지 및 진출입로 조성(단독주택4동) / 4,990㎡ / 2015. 12. 4.~2017. 9. 30

발견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및 의견조회’ 문서로 행위자에게 2016. 7. 1.까지 원상회복명령을 통지한 사실이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133조에 따르면 개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40조에 따르면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평창군(○○○○과)에서는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내용과 다르게 무단으로 공작물을 축조하는 등의 위법내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40조에 따라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고발, 행정대집행 등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고 행위자의 원상복구 내용이 위법행위 이전의 상태로 적정하게 회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등 개발행위 허가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했다.

그런데 평창군 ○○○○과는 2016. 6. 16. 개발행위허가지에 대한 석축 축조 및 민원인 소유 농경지와 연결된 배수로 문제로 접수<sup>76)</sup>된 민원에 대하여 ○○과로부터 검토 요청<sup>77)</sup>을 받고

아래 [표 1] 과 같이 허가사항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공작물을 축조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6. 6 .20. ○○과로 통보한 회신문서<sup>78)</sup> 및 2016. 6. 24. 수 허가자

76) 접수번호-00000(2016. 0. 00.) “○○○면 ○○리 0-00(임)의 3필지 산지전용허가의 건”

77) ○○과-00000(2016. 0. 00.)호 “ 민원접수에 따른 검토 요청”

에게 통보한 문서<sup>79)</sup>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국토계획법」 제56조제2항을 위반한 사실과 함께 같은 법 제60조, 제133조에 따른 행정처분 이전 「행정절차법」 제21, 제22조에 따라 원상회복명령 및 불응 시 허가취소나 고발조치 등의 처분예정 사항을 2016. 7. 1. 까지 제출하도록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위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청의 처분예고에도 불구하고 수 허가자는 원상복구 이행여부 등의 의견을 기간 내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사전통지에 따른 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및 고발 등의 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했으나, 2개월이 지나도록 행정처분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다가 2016년 강원도 정부합동감사 사전조사 기간 중인 2016. 8. 29. 관련 민원 건에 대한 자료를 요구 하자 2016. 8. 30.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sup>80)</sup>을 한 사실이 있다.

[표 1] 불법 개발행위허가 위법내용

위 치	행 위 자	위 법 사 항			조 치 계 획	비 고
		지 목	면 적	내 용		
강원도 평창군 ○○○면 ○○리 0-00, 0-00, 0-00	○○○○○○○○ 법인대표 ○○○	임	L=48m	허가사항 초과 공작물축조 (2~3.5m → 3.5m이상)	원상회복명령 시정조치	

또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 허가지 주변 토지에 대한 불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여 불법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국토계획법」 제 133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및 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산지관리법」 제14조, 제53조에 따르면,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항을 위반하여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78) ○○○○과-00000(2016. 0. 00.)호 “민원접수에 따른 검토의견 회신”

79) ○○○○과-00000(2016. 0. 00.)호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및 의견조회”

80) ○○○○과-00000(2016. 0. 00.)호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전용을 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평창군(○○○○과, ○○과)에서는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허가구역 외 토지의 불법형질변경 등의 행위나 산지불법전용을 철저히 단속하여 불법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국토계획법」 제133조 및 「산지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및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 등 허가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불법으로 산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평창군(○○○○과, ○○과)은 감사기간 중인 2016. 9. 12. 및 2016. 9. 22. 실시한 지적현황 측량 결과, 아래 [표 2]의 산지불법전용 현황과 같이 ○○○○○○법인 대표 ○○○이 단독주택 및 진출입로 조성목적의 산지개발을 하면서 허가구역 외 평창군 ○○○면 ○○리 소재 임야 0-00번지 외 2필지의 산림 236㎡를 불법으로 훼손하여 원상복구비 3,171천원 상당의 산림에 피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개발행위 허가사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사전에 위와 같은 위법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40조 및 「산지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원상회복 및 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뒤늦게 위법사실을 인지하고 불법으로 전용된 산지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다.

[표 2] 산지불법전용 현황

위 치	행위자	불법사항			조치사항	비고
		면적	내용	피해액		
강원도 평창군 ○○○면 ○○리 0-00, 0-00(임야)	○○○○○○○ 법인대표 ○○○	236㎡	산지 무단 형질변경	3,171천원 (복구비용)	2016. 0. 00. 범죄인지보고 2016. 0. 00. 범죄인지보고 (추가) * 사건처리 중(실황 조사 실시)	

위 건과 관련하여 업무담당(○○○)은 2016. 1. 1.부터 동 민원제기 업무를

처리하면서 담당자가 보고하여 2016. 6. 24. 수 허가자에게 1차로 시정명령을 할 것을 통보하면서 담당으로서 결재한 사실로 보아 이후 이행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담당자(○○○)가 2016. 6. 30.부로 타부서로 전보되었으나, 후임자가 인수·인계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그대로 방치하였으며 2016. 8. 29. 정부합동감사를 받으면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업무담당자가 전보되어 진행 중이던 진정민원을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했음에도 소극적으로 함으로써 제기한 민원에 대한 동료 공무원들이 유착 의혹을 제기하는 등 행정의 신뢰를 실추 시키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 조치할 사항            평창군수는

[징계] 위 관련자 중 ○○○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징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위 관련자 중 ○○○, ○○○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① 개발행위허가 사항을 초과하여 시공한 인접 토지 경계부 석축쌓기 등에 대하여는 높이를 낮추는 등 시정조치 하시고,

② 아울러 동 건 허가면적을 초과한 추가산림 훼손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개발행위허가 건에 대하여 추가 산림훼손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허가건 관리·감독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